

정보교류 차단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지침

2021. 5. 20 제정

제1절 정보차단벽

제1조 (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45 조(정보교류의 차단) 및 당사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방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해상충의 관리를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설정 및 미공개중요정보의 식별 기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차단한다.

1.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구성 내역과 매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4.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회계장부 및 회계처리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5. 고유재산으로 투자한 자산의 구성 내역과 매매에 관한 정보
6. 법규의 제·개정이나 업무영역 확대 등으로 인하여 이 지침의 목적상 정보교류의 차단이 필요하다고 준법감시인이 지정하는 정보

② 제2조 ①항 1호에서 정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식별기준은 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즉, 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되어 아직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로써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2.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3.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4.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5.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6.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7.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
8.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른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의 공시 또는 공표
9.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10.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11.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12.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하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제3조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책임자의 지정)

- ① 업무상 제2조 1항 각호에서 정하는 정보를 접하는 본부 또는 팀을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부문으로 설정하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임직원은 해당 본부 또는 팀에 속한 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 관련한 법규와 사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식운용부문하의 모든 본부장
 2. 채권&솔루션부문하의 모든 본부장
 3. AI 본부장
 4. 기관마케팅 팀장
 5. 경영지원팀장
 6. 펀드회계팀장
 7. 컴플라이언스팀장
- ② 회사의 조직개편이나 1항 각호의 명칭 등의 변경이 생길 경우 준법감시인은 이 지침의 변경이 없어도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설치 및 운영)

- ① 정보교류의 차단 및 예외적 교류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회사의 정보교류 차단 정책

이나 지침을 총괄하는 정보교류 통제 담당 조직 및 책임자로서 컴플라이언스팀과 준법감시인을 지정한다.

- ② 준법감시인과 컴플라이언스팀은 정보교류 통제 책임자와 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지정
 - 2. 정보교류 차단 부문 설정 및 부문별 책임자 지정
 - 3. 정보교류 차단 정책 또는 지침의 제안
 - 4. 교육 및 정보교류 차단 관련 공시의무 이행
 - 5. 기타 정보교류 차단 관련 이슈 모니터링 및 조언

제 2절 사내 정보교류 차단 방법 및 예외적 교류

제5조 (정보교류 차단의 일반 원칙)

- ①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상 접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정보를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동일 부문 또는 동일 팀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면 아니된다.
- ③ 모든 임직원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우연히 접근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컴플라이언스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준법감시인과 컴플라이언스팀은 1항내지 3항의 모든 임직원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절차,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사용 내역 보고 등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

제6조 (상시적인 정보 교류의 차단 장치)

- ① 컴플라이언스팀과 정보시스템 담당자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임직원에게만 허용되도록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또는 팀의 임직원은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및 팀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7조 (정보교류 차단의 예외적 교류 및 기록 유지)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이 이행될 것을 전제로 정보교류차단 대상 또는 팀간이나 정보교류차단 대상이 아닌 부문이나 팀과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의 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2.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의 내용 및 정보교류의 이유, 정보 제공자 및 수령자의 소속 및 성명, 정보교류 일시, 승인자의 소속 성명 등을 기록한 정보교류차단 예외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3. 제3조 1항 각호에서 정한 정보교류차단 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계속적 반복적 교류를 위한 포괄 승인 포함)
 4. 교류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할 것
 5. 제공받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6. 본조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제공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또는 팀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을 준수할 것
 7.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교류와 관련한 신청서 등의 기록은 컴플라이언스팀에 제출되어야 하며 최소보존기간 5년을 유지 관리할 것
 8. 준법감시인은 정보교류차단 총괄책임자로서 연1회 이상 정보교류 차단 예외 등에 관한 기록 유지 상태를 점검할 것
- ② 회사가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는 임직원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이사
 2. 준법감시인
 3. 컴플라이언스팀원
 4. 기타 업무상 정보교류가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사전에 승인 받은 임직원
- ③ 제2항에 따른 임직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금지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절 사외 정보교류 차단

제 8 조 집합투자증권 판매사 등 제3자와의 정보 교류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제3자에 대해 제2조1항 각 호의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1개월이 지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2항과 3항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1. 회사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이하 동조에서 "집합투자증권 판매사")

2. 신탁업자

3. 이 외 준법감시인이 지정한 자

- ② 제공하는 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 제공목적등에 관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공하는 부서는 제공정보의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5년동안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절 이해상충 관리

제9조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의 유형 및 이해상충의 관리)

- ① 모든 임직원은 이해의 상충을 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이해상충의 거래 또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이해상충을 관리하여야 한다.
 - 1. 모든 임직원은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을 인지하였다면 즉시 직속상사와 준법감시인에게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2. 보고 받은 직속상사와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의 여부를 판단하고 이해상충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조언하고 협의하며 이해상충 관련자는 준법감시인의 조언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중대한 이해상충은 준법감시인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 4. 컴플라이언스팀은 이해상충 보고사항 및 처리에 관하여 기록을 관리하고 유지한다.
- ②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이해상충의 유형	제목	세부내용	이해상충 방지수단
회사 vs 고객	회사보유 증권 등에 대한 투자	회사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장주식등을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 구에서 집중 투자	고유재산운용과 신탁 재산 운용 간의 차이 니즈월 설치
	중개회사의 선정	조사분석자료보다는 회사에 소프트달러를 많이 제공하는 증권회사에 약 정을 우선 배분	각 운용부문별로 중개 회사 선정기준이 적정 한 지를 준법감시인이 사전에 확인
	주요 고객의 인사청탁	기관 고객이 친인척의 채용을 청탁함	복수의 후보 선정 및 다수 면접관의 만장일 치로 채용 결정
	의결권의 청탁	주요 판매회사가 상장계 열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의결권행사를 청탁	의결권 행사 지침에 부합하는 의결권 행사 및 준수 여부 점검

임직원 vs 고객	개인투자행위	임직원이 자기가 운용하는 일임계좌보다 개인계좌의 거래를 우선적으로 처리	임직원금융투자상품 매매 업무지침 제정하고 교육 및 준수여부 점검
	선물 및 향응의 수령	중개회사로부터 골프점대를 받고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하거나 주문수량을 증가시킴	재산상이익의 제공 및 수령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교육 및 준수 여부 점검
회사 vs 임직원	대외활동 및 부업	회사업무 이외의 사적활동 등으로 인하여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사전보고 및 승인 의무화
	인사청탁	인사담당 임원이 자기의 친족을 채용 하도록 하기 위해 유력한 지원자를 서류 탈락 시킴.	사전에 직속상사와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본인은 해당 채용 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함.
고객 vs 고객	집합투자기구의 Front running	동일한 운용역이 특정한 집합투자기구의 매매를 항상 최우선으로 집행	컴플라이언스팀은 Trading compliance 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집합투자기구의 자선거래	자선거래를 통하여 현금화가 즉시 안되는 자산을 부적절한 가격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매도	가격 및 조건 등을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르면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의무화

- ③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예상되는 경우를 피하여야 하나 우연히 또는 불가피하게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고객간의 이익은 상호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 ④ 이해상충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는 이 지침 이외에도 내부통제기준을 비롯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처리 지침, 의결권 행사 지침,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세부지침, 스톱어드쉽코드 관련 이해상충 방지 정책 등도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정책이나 지침이 추가될 수 있고 임직원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직원의 겸직)

이해상충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회사는 지배구조법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3자의 임직원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5절 기타

제11조 (임직원 교육 및 정보교류 차단 정책 등의 공개)

①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관련하여 위반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사항
2. 모든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의 이용 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준법감시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5월 20일에 시행한다.